

도로점용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 공고

보도상에 방치되어 있는 무허가 보도상영업시설물(구두수선대)에 대하여 「도로법」 제73조(원상회복)에 따라 원상회복명령서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으로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 8. 21.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 목 : 무허가 보도상영업시설물(구두수선대) 도로점용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8. 8. 21.(화) ~ 2018. 9. 4.(화)
3. 공고대상

무단점유자	시설물명	무단점유지	비고
망 장명만의 상속인 (김옥례, 장상민, 장현정)	구두수선대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42길 13	

4.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기타사항

가. 위 공고기간내에 원상회복 및 자진정비를 해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도로법」에 의하여 행정처분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 건설관리과 가로정비팀(02-3153-97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